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4. 11.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7월 16일, 문정복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7월 1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4.8.26.)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4.9.25.) 상정, 축조심사

제2차 법안심사소위(2024.10.29.)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
기)

제9차 교육위원회(2024.11.5.)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제1차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
원회(2024.11.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0차 교육위원회(2024.11.6.)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문정복의원)

현행법에서는 국가는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에 필요한 비용 중 1,000분의 47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2024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런데 고물가와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경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각 지역의 교육재정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당 특례의 적용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여 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6673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강대훈)

개정안에 따르면, 과거 누리과정 재원 부담 주체 논란과 같이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간에 비용 부담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며,

고교 무상교육은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하며,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므로 특례 규정을 연장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특례 규정의 계속된 연장은 법의 예측 가능성을 해칠 수 있으며, 장기적인 시각에서 특례 규정에 의존하는 방식은 재원의 안정적인 조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대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재원 조달 방식이 있는지 논의할 필요성 또한 존재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문정복)

문정복 의원, 진선미 의원, 서영교 의원, 강경숙 의원, 조정훈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고,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